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2015. 06. 01.

제1장 총칙

제 1 조(목 적)

본 운영지침은 ‘2015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2015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이라 함은 우수 예비·초기 창업팀(Startup)을 발굴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시작품 제작지원 등)과 투자유치 기회제공을 통해 실전창업 역량향상과 성공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② “주최기관” 이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 사업가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대회를 개최하는 KDB나눔재단을 말한다.
- ③ “주관기관” 이란 청년층의 도전정신과 열정을 고취하고 창조적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가 육성에 앞장서기 위해 신청팀 모집, 평가선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실행하는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말한다.
- ④ “평가위원회” 란 참가팀 선정과 사업지원금을 받는 팀을 선정하기 위해 주관기관이 제11조에 따라 선정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 ⑤ “신청팀” 이란 만 20세~39세의 우수 예비·초기 창업기업(팀)으로 제7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에 접수한 1인 이상 5인 이하의 팀을 말한다.
- ⑥ “참가팀” 이란 신청팀 중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제6장, 제7장에서 정한 각종 지원을 받는 우수 예비·초기 창업기업(팀)을 말한다.
- ⑦ “서류심사” 란 신청팀이 제출한 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평가위원회가 2차에 걸쳐 서면평가하여 선정캠프 진출팀을 선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 ⑧ “선정캠프” 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팀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사업계획서 발표 등을 통해 참가팀을 선정하는 캠프를 말한다.
- ⑨ “데모데이” 라 함은 참가팀에서 사업설명회(IR)을 통해 사업아이템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지원금(총 1.5억원)을 지원받을 팀을 선정하는 최종평가절차를 말한다.

- ⑩ “사업지원금”이란 데모데이를 통해 참가팀이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 및 간접비를 말한다.
- ⑪ “스타트업 클래스(이하 ‘클래스’라 한다.)”란 실전창업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및 멘토링, 세미나 등의 과정을 말한다.
- ⑫ “스타트업 카페(가칭)(이하 ‘카페’라 한다.)”란 사업기획, 협업, 회의, 교육 및 멘토링 등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아이디어 개발 공간지원을 말한다.
- ⑬ “스타트업 멘토링(이하 ‘멘토링’이라 한다.)”이란 입체적(크로스) 멘토링을 통한 분야별 창업 역량 강화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과정을 말한다.
 - 가. “전담멘토”란 참가팀과의 1:1 매칭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투자유치까지 전담 멘토링을 실행할 자를 말한다.
 - 나. “선배멘토”란 비슷한 분야의 참가팀과 정기적인 멘토링을 통해 창업에 대한 현실적 경험과 시야를 넓혀주는 멘토링을 실행할 자를 말한다.
- ⑭ “시작품 제작지원”이란 시작품 제작비 또는 제작업체 지원을 통해 제품, 서비스, 사업 등을 실제 구현(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⑮ “글로벌 진출지원”이란 참가팀 중 글로벌 진출에 적합한 유망 예비·초기 창업팀을 선정하여 해외 박람회 및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을 목적으로 한 행사 참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⑯ “후속지원”이란 데모데이 이후 참가팀의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IR), 세무/회계 상담, 네트워킹, 멘토링 등의 과정을 말한다.
- ⑰ “삼진아웃제도”란 참가팀이 프로그램 참가 중 ‘제6조(참가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2차에 걸친 경고 후 3차 중도 탈락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운영지침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프로그램별 실행에 관한 세부 지침은 참가팀에게 추후 별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 4 조(주최기관) KDB나눔재단은 주최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정보공유 및 협의
- ② 프로그램 협약체결, 본 프로그램 사업비 지급 및 집행관리
- ③ 프로그램 홍보 및 예산확보
- ④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주관기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주관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우수 예비·초기 창업기업(Startup) 발굴
- ② 주관기관 및 참가팀과의 스타트업 카페 운영
- ③ 참가팀의 창업사업화 지원
- ④ 프로그램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 ⑤ 주최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⑥ 사업의 중간 및 최종 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⑦ 사업성과의 활용 등 관련 보고서 제출
- ⑧ 사업종료 후 3년 간 참가팀 창업성과 관리(매출액, 고용, 투자유치 현황 등의 성과)
- ⑨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⑩ 참가팀의 사업지원금 관리 및 집행점검
- ⑪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조(참가팀의 의무) 참가팀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①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프로그램 참가기간 동안 정해진 바에 따라 프로그램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② 각종 제출자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작성 및 제출한다.
- ③ 프로그램 참가팀 선정과정인 선정캠프에는 팀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장려하나, 필수 사항은 아니다. 단, 데모데이는 팀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 ④ 프로그램 참가팀으로 선정된 후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할 것을 붙임1 '참가 서약서'에 서명 후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 ⑤ 상기 의무를 불이행하는 팀에 대해 주관기관은 자체적인 판단 하에 삼진아웃제도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 참가자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

제3장 참가신청 및 접수

제 7 조(참가자격) 사업화에 필요한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팀

- ① 팀 구성원은 1~5명으로 구성, 1인을 대표자로 신청(신청 후 변경 불가)
- ② 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1.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1976.05.27.부터 1995.05.27.까지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자
 2.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으로 법인설립 및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개인사업자 가능, 참가팀 선정 전까지 법인등록을 진행 중이거나 법인등록이 완료될 경우 자동 탈락)
 3. 최근 3년 간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으로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창업지원금, 투자금, 상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자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기타 위 각호에 상응하는 사유 또는 이를 우회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주관기관이 참가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자
- ③ 단, 팀원은 상기 결격사유 제한없음

제 8 조(참가분야)

- ① 제한없음
- ② 단, 주관기관이 사행성 등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외

제 9 조(접수방법)

- ① 참가접수는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http://kdbstyartup.or.kr>)에서 2015년 6월 1일(월)부터 진행되며, 붙임2 ‘참가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을 참고한다.
- ② 프로그램 참가신청서는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의 양식 입력 후 온라인으로 직접 업로드(1개/10MB 이하)한다.

제 10 조(접수마감)

- ① 접수마감은 2015년 6월 26일(금) 16:00 까지이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 및 수정이 일체 불가능하다.
- ② 신청팀이 모집공고상의 접수마감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9조 접수방법 일부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심사과정

제 11 조(평가위원회)

- ① 주관기관은 신청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어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분야별 신청지원서의 선정평가
 2. 선정캠프 및 데모데이 진출팀 선정평가
 3. 시제품 제작지원 사전심의
 4. 데모데이 최종 평가
 5. 기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주최/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경영·창업·교육 분야 전문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가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3. 위원회 구성인원의 과반수 이상은 주최/주관기관의 소속이 아닌 자로 정한다.
- ③ 평가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자
 4.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변리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주관기관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 선정에서 제척한다.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제한 등록 중인 자
 2. 신청팀 또는 신청팀의 기업에 소속된 자
 3. 신청팀의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자
 4.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신청팀 또는 신청기업의 사용인, 임원, 또는 그에 준 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5.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신청팀 또는 신청팀 기업과 뚜렷한 이해관계(사외이사, 자문역, 용역수행 등)가 있는 자
 6.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⑥ 주관기관의 장은 공정한 심사에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기피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본인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평가위원을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⑦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운영비 및 위원의 심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2 조(서류심사)

-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발한다.
 1. 제7조 및 제8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팀
 2. 제10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팀
- ② 서류심사는 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토대로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③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적인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1차 총 60팀 내외, 2차 총 30팀내외를 선정한다.
- ④ 선정결과는 7월 3일(금) 14:00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제 13 조(선정캠프)

- ① 선정캠프는 2015년 7월 4일(토)~6일(월) 2박3일간 서울/경기 근교 교육장에서 진행하며,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총 15팀내외를 선발한다.
- ② 참가팀은 선정캠프 마지막날 정오(12시)까지 발표자료(PDF)를 이메일(kdbstartup@koef.or.kr)로 제출하며, 마감 시간이 지난 제출 자료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③ 발표시간은 총 5분으로 발표 3분, 질의 응답 2분으로 진행한다.
- ④ 선정캠프 심사는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⑤ 선정결과는 7월 8일(수) 14:00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제 14 조(데모데이)

- ① 데모데이는 2015년 11월 중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한다.
- ② 데모데이 발표자료는 10월 30일(금) 16:00까지 이메일(kdbstartup@koef.or.kr)로 제출하며, 마감 시간이 지난 제출 자료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③ 데모데이 심사는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와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④ 참가팀에 배정된 사업지원금은 데모데이 당일 시상식을 통해 발표한다.

제6장 지원사업

제 15 조(스타트업 클래스)

- ① 클래스는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토/일 포함) 총 10회에 걸쳐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공간에서 진행한다.
- ② 클래스 기간 중 팀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장려하나, 필수 사항은 아니다. 단, 대표자의 출석률은 데모데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 ③ 클래스의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로 공지한다.

제 16 조(스타트업 카페)

- ① 카페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탐스커버리 강남점의 지정된 협업공간에서 진행한다.
- ② 카페는 협업공간과 비즈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 ③ 카페는 참가팀의 사업기획, 멘토링, 회의, 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로의 지정은 제한한다.
- ④ 카페의 협업공간은 참가팀만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인과의 회의 등은 비즈니스룸등을 이용한다.
- ⑤ 참가팀은 카페 이용을 위해서 주관기관에 다음 각 호 제공해야 한다.
 1. 카페 이용 협약서 체결
 2. 출입관리를 위한 생체정보(지문)
 3. 긴급상황을 대비한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4. 기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카페의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지급되는 카페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17 조(스타트업 멘토링)

- ① 멘토링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멘토와 참가팀이 협의하여 지정한 공간에서 진행한다.
- ② 전담멘토링은 1:1 멘토링을, 선배멘토링은 1:다수 멘토링을 장려하나, 멘토와 참가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전담멘토링과 선배멘토링은 각 월 1회를 기본으로 한다.
- ④ 멘토링은 팀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장려하나, 필수 사항은 아니다. 단, 대표자의 출석률은 데모데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 ⑤ 멘토와 참가팀은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관기관의 중재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⑥ 멘토링의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지급되는 멘토링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18 조(시작품 제작지원)

- ① 참가팀은 총 3백만원 상당의 시작품 제작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참가팀은 시작품 제작지원 공고일로부터 2015년 10월 30일(금)까지 시작품 제작을 완료해야 한다.
- ③ 참가팀은 시작품 제작 사전신청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시작품 제작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시작품 제작지원은 주관기관이 사전심의를 거쳐 선정된 업체 이용을 장려하나, 다음의 경우 전담멘토, 평가위원회 전문위원, 주관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하다.
 1. 업체의 능력(특허, 기술, 용역, 위치, 구조, 품질)에 의해 경쟁이 불가한 경우
 2. 주관기관이 선정된 업체를 통해 제작할 수 없는 경우
 3. 아이템 및 관련기술의 비밀엄수가 필요한 경우
- ⑤ 시작품 제작지원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지급되는 시작품 제작비 사용규정에 따른다.

제 19 조(글로벌 진출지원)

- ① 글로벌 진출지원은 참가팀 중 글로벌 진출에 적합한 팀을 선정하여 해외 박람회 및 경진대회 등의 참가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글로벌 진출지원 심사는 주관기관에서 선정된 평가위원회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 ③ 글로벌 진출지원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지급되는 글로벌 진출지원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20 조(후속지원)

- ① 후속지원은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공간에서 진행한다.
- ② 후속지원 기간 중 팀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장려하나, 필수 사항은 아니다. 단, 졸업식(가칭)은 팀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 ③ 후속지원의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로 지급되는 후속지원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장 사업지원금

제 21 조(내역)

- ① 참가팀은 데모데이 모의투자를 통해 총 1.5억원의 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② 사업지원금 사용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지급되는 사업지원금 사용규정에 따른다.

제 22 조(취소)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지원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사업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 ① 제출한 서류를 허위 기재한 경우
- ② 운영규정에 어긋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 ③ 표절 등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④ 프로그램 종료 후라도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8장 보칙

제 23 조(이의신청) 신청팀 및 참가팀은 다음 각 항에 이의가 있을 시 그 결과를 공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붙임3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붙임4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① 제12조에 의한 1차/2차 서류심사 결과
- ② 제13조에 의한 선정캠프 결과
- ③ 제14조에 의한 데모데이 결과

제 24 조(비밀유지) 참가팀의 개인 정보 및 제출자료는 본 프로그램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단, 일부 정보(성명, 연락처, 아이템 등)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외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용될 수 있다.

- ① 타 프로그램 수상이력 및 중복지원 확인
- ② 타 사업 아이템의 표절·차용 여부 및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 ③ 벤처, 창업, 엔젤투자 관련 행사 정보 공유
- ④ 주관기관, 정부 등 관련 설문조사

제 25 조(저작권)

- ① 사업의 저작권은 참가팀에 귀속되며, 향후 지적재산권 등 관련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은 참가팀에 있다.
- ② 참가팀의 사업아이템이 타인의 저작권을 표절하거나 침해할 경우, 참가팀의 모든 자격은 적발 즉시 박탈되며 참가팀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위 제2항에 해당될 경우, 모든 지원 혜택은 취소 및 환수되며, 해당팀 및 팀원은 향후 3년간 동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다. 또한, 모든 법률적 책임은 해당팀에 있다.

제 26 조(해석)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 27 조(관련서류의 보관과 폐기) 신청팀과 참가팀이 제출한 개인정보와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는 기업회계기준(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의거 최초 프로그램 신청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 28 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주관기관과 신청팀, 참가팀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 ② 주관기관과 신청팀, 참가팀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한다.

참가 서약서

본인은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가함에 있어 참가팀을 대표하여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참가 안내사항을 숙지했으며 이해하고,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및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2. 프로그램 진행 간 촬영될 수 있고, 자료로 남겨지거나 공개적으로 게시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심사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정정당당히 과정운영에 임하겠습니다.
4.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재단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감수하겠습니다.
5. 참가팀으로 결정됨에 따라 언론사 등에 사업아이템 등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지적재산권 등 수상 관련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6. 사업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 시,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5년 00월 00일

팀 명 :

대 표 자 :

(서명)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귀하

【 작성요령 】

1. 참가신청서

- ① 참가분야 : 참가 아이템의 해당 분야 체크
 - ② 사업 아이템 : 참가 아이템명
 - ③ 사업 아이템 개요 : 참가 아이템에 대한 간단한 개요 작성(50자 內)
 - ④ 참가팀 인적사항 : 참가팀과 대표자의 인적사항 작성
 - ⑤ 팀원 인적사항 :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담당자 인적사항 작성
 - ⑥ 신청일 : 접수일자 작성
 - ⑦ 대표자 : 대표자명 작성 후, (인)란에 인감도장 or 서명 날인
- ※ 중고딕, 10pt, 130% 작성

2. 사업계획서

- ① 창업(팀 구성) 히스토리 : 창업 배경, 목표, 아이템 선정 동기 등을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
 - ② 구성원 소개 : 구성원의 자세한 이력 및 경력을 서술하되, 실무위주로 자세히 서술
 - ③ 아이디어/아이템 특징 : 아이템에 대한 세부 내용 등 자세히 서술
 - ④ 보유기술 : 보유기술을 설명하고, 히든소스 및 보유한 기술의 시장분석 및 목표 서술
 - ⑤ 사업계획(시장성) :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한 시장수요, 사업성, 경쟁제품 현황 등에 대한 분석결과 및 근거를 제시한 자료
 - ⑥ 사업계획(사업화 계획 및 실행) : 시작품 제작 또는 서비스 개시, 홍보·판매 전략, 목표치와 성과
 - ⑦ 사업계획(자금조달 및 손익분석) :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하여 표기(과거, 현재는 미기입 가능)
 - ⑧ 비즈니스모델 : 비즈니스모델을 자세히 서술
 - ⑨ 파급효과 : 사업화 성공에 따른 파급효과 서술
- ※ 중고딕, 12pt, 160% 작성

【 유의사항 】

1. 참가신청서, 사업요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서약서 공란없이 모두 기재
2. 기타 증빙서류는 참가신청서 붙임4 '기타 증빙서류'에 스캔 후 삽입
3. 참가접수는 공식 홈페이지(<http://kdbstyartup.or.kr>)에서 2015년 6월 26일(금) 16:00 마감
4. 마감시간은 어떠한 사유(서버다운, 지연 등)로도 연장되지 않음
5. 참가접수시 참가신청서는 1개 파일(10MB 이하)로 업로드
6. 접수된 참가신청서는 접수마감 이전에만 수정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정 불가
7. 타인의 지적재산권(아이디어, 기술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책임은 해당팀에 있음

1. 개요

참가팀은 1차/2차 서류심사, 선정캠프, 데모데이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절차

- ① 참가팀은 1차/2차 서류심사, 선정캠프, 데모데이의 심사결과 발표일 또는 공지일로부터 3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참가팀은 붙임4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이의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주최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하거나 필요 시 평가위원회에게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3. 결과의 통보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심의 후 15일 이내에 참가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4. 절차

타인에 대한 심의결과 공개 요청은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않는다.

끝.

이의제기 신청서

팀 명		대표자명	
휴대전화		e-mail	
심사단계	1차·2차 서류심사 / 선정캠프 / 데모데이		
이의제기 사유			
세부내용			

본인은 「2015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 합니다.

2015년 00월 00일

팀 명 :

대 표 자 :

(서명)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귀하